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가등의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 부과 등 〉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26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가등의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 부과	3
2.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	10
※ 참고자료	22

I. 제안경위

2025년 6월 13일 전용기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촉진하기 위해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의 제반 규정이 마련되었음. 국내에서도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전기굴착기가 출시되었고, 동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급 상황은 미진함.

이에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도록 규정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를 사용하고 국내에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를 부

과하고 그 외의 자에도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5).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계획과 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8조의6 및 제58조의7).

다. 환경부장관이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를 촉진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의8 및 제58조의9).

라. 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5).

마.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0조의6).

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벌칙 부과(안 제91조) .

사.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 신고하지 않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인증시험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안 제94조제2항제5호 및 제94조제3항제10호의2).

Ⅲ. 검토의견

1. 공공기관의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 의무 부과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건설기계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를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 및 제94조제2항제5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u>자동차를 가지고 있는</u> 다음 각 호의 기관은 <u>자동차를 새로</u>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u>저공해자동차를</u>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임차 등) ① ----- ----- <u>자동차 또는</u> <u>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u> ----- <u>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새로</u> ----- ----- -----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u>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u>자동차를 가진</u> 자가 <u>자동차를 새로</u> 구매하거나	② ----- ----- ----- ----- ----- <u>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가진</u> ---- <u>자동차 또는 건설</u>

현행	개정안
임차하는 경우에는 <u>저공해자동차</u>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u>저공해자동차</u>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u>저공해자동차의</u>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의6(<u>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계획</u>)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u>자동차를</u>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u>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u>(이하 “<u>구매·임차계획</u>”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의7(<u>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실적</u>)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u>구매·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u> 구매·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의8(<u>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u>) 환경부장관은 <u>저공해자동차의</u> 구매·임	<u>기계를 새로-----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u> -----. ③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u> -----<u>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의</u> ----- -----. 제58조의6(<u>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임차 계획</u>) ① ----- <u>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u> ----- -----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구매---</u> -----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7(<u>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임차 실적</u>) ① -----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u> ----- -----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의8(<u>저공해자동차 등의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u>) -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u>

현행	개정안
차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u>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실적</u>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8조의9(<u>저공해자동차</u>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u>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u>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u>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u>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u>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u>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 ⑥ (생략)	<u>건설기계의</u>----- -----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u> <u>구매·임차</u>----- -----. ----- ----- -----. 제58조의9(<u>저공해자동차</u> 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 ----- -----<u>저공해자동차</u> <u>및 저공해건설기계의 출시와</u> ---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u> <u>건설기계의 구매·임차</u>----- -----.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저공해</u> <u>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u>---- ----- ----- ③ ~ ⑥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9까지 및 제9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법 제58조의51)에서는 6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제58조의6) 및 구매·임차 실적 제출(제58조의7), 구매·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제58조의8)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제58조의9)의 규정을 두고 있음.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대상 기관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참고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관련 대상 차량과 의무 비율,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음.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운영 현황]

연도		‘05~’10	‘11~’16	‘17~’18	‘19	‘20	‘21~’22	‘23~
구매·임차 차량*		경유(~’19.6),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전기·수소
의무비율		20%	30%	50%	70%	100%	100% (전기·수소 80%)	100%
대상 기관	구 분	국가기관·공공기관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新)			
	지 역	수도권				전국		
	보유 대수	10대 이상				6대 이상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해당 유종의 자동차 중 저공해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 인증을 취득한 자동차로 한정

이와 같은 제도는 자동차에 한정된 것으로, 최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수소지게차·전기굴착기 등 저공해건설기계²⁾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저공해건설기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소비자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장 보급 속도가 더딘 실정임.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건설기계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건설기계로 의무 구매·임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부문에서 저공해건설기계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저공해장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민간시장에서의 보급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는 저공해건설기계 의무 구매·임차제도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시행일이 이미 지난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기관등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건설기계 구매·임차계획부터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과³⁾받게 되는데,

현재 저공해건설기계의 출시 현황⁴⁾ 및 국가기관등의 건설기계 보유

3)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매·임차계획을 부과받음

4)

[D 산업차량 전지저장장치 현황('23.3)]

모델명	적재하중(톤)	소비자가 (만원)	모델명	적재하중(톤)	소비자가 (만원)
B15S-7	1.5	2,829	B30S-7	3	3,542
B18S-7	1.8	2,870	B32S-7	3.2	3,600
B20S-7	2	3,149	B45X-7	4.5	6,289
B25S-7	2.5	3,247	B50X-7	5	6,667

※ 그 밖에 국내 클라크·현대 및 중소기업, 수입(日 도요타·中 BYD) 등 다수 제작사 출시

[수소전지저장장치 출시예정 현황]

제 조·수입사	두산산업차량			현대사이트솔루션		
적재하중	1톤급	3톤급	4톤급	2.5톤급	3톤급	3.5톤급
출시 시기	'24.下	'23.11월	'24.下	'24.上	'24.上	'24.上

현황⁵⁾을 볼 때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기관등에서 건설기계를 구매·임차하려는 수요는 농업기술센터 등 상대적으로 한정적이고, 대체가능한 저공해건설기계의 선택지가 현재까지는 다양하지 아니하다⁶⁾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보다 유예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부문이 보다 선제적으로 저공해건설기계의 안정적인 보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고, 상용화 초기 단계로 인하여 대체 가능한 저공해 모델이 많지 않으나 저공해 자동차 의무구매·임차제 도입 당시와 같이 낮은 의무 비율로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일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지자체 예산 편성 등 제도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회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5) 2022년 기준 국가기관등(333개)이 보유한 건설기계는 총 3,616대(지게차 1,290대, 굴착기 1,540대 및 로더 594대)임(기후부).

6) 로더(Loader)의 경우 국내에 출시된 저공해건설기계 모델이 없음('23.11.기준)

2.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등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업무를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의무 및 대행기관 지정 취소 요건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의무 위반 시의 벌칙 및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60조의6 신설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60조의5(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현행	개정안
<신 설>	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6(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illegible]

현행	개정안
에 따른 연료의 제조·판매·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u>대행</u>,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업무의 <u>대행</u>,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u>대행</u>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u>8의2.·8의3.</u> (생략)	----- ----- ----- ----- ----- ----- -----<u>대행</u>, 제60조의6에 따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의 <u>대행</u>, 제62조에-----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u>8의2. 제60조의5에 따라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u> <u>8의3.·8의4.</u> (현행 제8호의2 및 제8

현행	개정안
9.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5의2·5의3 (생략) <u><신설></u> 6. ~ 13. (생략) 제94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10의2 (생략) <u><신설></u> 11. ~ 16. (생략) ④ ~ ⑥ (생략)	호의3과 같음)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1조(벌칙)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5의3 (현행과 같음) <u>5의4. 제60조의5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u> 6. ~ 13.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현행과 같음) <u>10의3.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u> 11. ~ 1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0조7)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는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인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험기관⁹⁾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험기관의 의무 및 지정취소의 근거

-
- 7)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③ 삭제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⑥ ~ ⑨ (생략)
- ⑩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시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8)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절차: ① 인증신청 접수(국립환경과학원) → ② 인증시험 대행(인증시험기관) → ③ 인증 적합 여부 심의(국립환경과학원 기술위원회) → ④ 인증서 교부(국립환경과학원)
- 9) 「운행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증시험기관) ① 규칙 제8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하는 시험기관(이하 "인증시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동차안전연구원
 2. 한국자동차연구원
 3. 한국기계연구원
 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인하대학교
 6. 한국석유관리원
 7. 한국환경공단(이륜자동차의 교체용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한정함)
 8.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등이 법률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한 인증시험 전문기관의 대행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거짓으로 지정을 받거나 인증시험을 수행하는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전문기관 지정 취소,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문기관 관련 운영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유사입법례로, 현행법 제48조¹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과 관련한 인증시험 전문기관 지정(제48조의2) 및 지정 취소(제48조의3)의 근거 또한 법률¹¹⁾에 규정되어 있음.

-
- 10)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작자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한편, 동 개정안 제82조제1항제8호의2에 대하여, 법무부는 수범자로 규정된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은 법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 기관에 종사하는 자연인이 행정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처벌 공백 발생 우려가 있어, 유사입법례인 「물환경보전법」¹²⁾과 같이 업자 등 자연인을 수범자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또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94조제2항제5호 외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의 위반(제3호)’이나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제4호)’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재할 필요도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과태료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제82조(보고와 검사 등) ① -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12) 「물환경보전법」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 2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3.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를 한 자
 - 4의2. 제6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5.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략) <신설> 8의2~8의5. (생략) 9. ~ 13. (생략) ② ~ ⑤ (생략)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u>저공해자동차</u>의 구매·임차 비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60조의5에 따라 <u>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u> 8의3.~8의6. (현행 제8호의3 ~ 제8호의6과 같음)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u> ----- ----- ----- ----- ③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60조의5에 따라 <u>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또는 대행자로 지정된 자</u> 8의3.~8의6. (현행 제8호의3 ~ 제8호의6과 같음) 9. ~ 1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u>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u>----- ----- ----- ③ ----- -----
---	--	---

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0. (생략) <u><신설></u>	-----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u>	----- -----.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60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u> <u>10의3. 제60조의5제3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u> <u>10의4. 제60조의5제3항제4호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을 한 자</u>
---	---	---

문 의 처

02)6788-5546

※ 참고자료

1.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임차제도 (자료: 기후부)

□ 추진 목적

- 공공부문에서 신규로 구매 또는 임차하는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토록 의무를 부과

□ 추진 경과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공공부문에서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추진('05~)
- 공공부문 저공해차 수요 창출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를 전국으로 확대('19.3,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4 하위법령 개정)

□ 제도 개요

- (대상 기관)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중 차량 6대 이상 보유기관
- (의무 비율) 신규 구매·임차 차량의 무공해차 비율* 100%('23년~)
 - * 차종에 따라 환산비율 적용('24년, 1.5~2.5대 / '25년 1.0~1.7대 / '26년 1.0대)
 -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비율·대상기관 점차 확대, 무공해차 구매·임차만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개선

연도	'05~'10	'11~'16	'17~'18	'19	'20	'21~'22	'23~
구매·임차 차량*	경유(~'19.6),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전기·수소						전기·수소
의무비율	20%	30%	50%	70%	100%	100% (전기·수소 80%)	100%
대상 기관	구 분	국가기관·공공기관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新)		
	지 역	수도권			전국		
	보유대수	10대 이상			6대 이상		

* 해당 유형의 자동차 중 저공해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여 인증을 취득한 자동차로 한정

- (추진 절차) ①차량 보유대수 입력(y-2년) → ②대상기관 알림(y-1년) → ③구매임차계획 제출(y-1년) → ④실적 제출(y+1년) → ⑤실적 확인 및 과태료(y+1년)
- (과태료) 비율 미달성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지자체·공공기관)